

「학술정보원(도서관)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5. 2. 16. 개정 판 (시행 2015. 3. 1.) → 2016. 2. 29. 개정 판 (시행 2016. 3. 1.)

바뀜 2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214/compare?from=537&to=539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9:00:12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대출한계) 일반자료의 대출책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. 1. 본교 전임교원(전임강사 이상) : 20책 90일 2. 본교 전임직원 : 10책 30일 3. 시간강사, 조교 : 10책 15일 4. 대학원생 : 10책 15일 5. 학부학생 : 5책 10일 6. 휴학생 : 2책 10일 7. 제8조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자 : 5책 15일	제17조(대출한계) 일반자료의 대출책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. 1. 본교 전임교원(전임강사 이상) : 20책 90일 2. 본교 전임직원 : 10책 30일 3. 강사, 조교 : 10책 15일 <개정 2016-02-29> 4. 대학원생 : 10책 15일 5. 학부학생 : 5책 10일 6. 휴학생 : 2책 10일 7. 제8조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자 : 5책 15일
제22조(이용불량자에 대한 조치) ①자료의 무단반출이나 절취 등 본 규정을 위반한 자는 파손자료 시가의 4배를 변상하며, 6개월간 도서관 이용을 금지하고, 학과장에게 통고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한다. ②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며, 수강신청, 복학원서, 휴학원서, 제 증명서 발급 및 제 급여금 지급보류 등을 교무처장과 사무처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.	제22조(이용불량자에 대한 조치) ①자료의 무단반출이나 절취 등 본 규정을 위반한 자는 파손자료 시가의 4배를 변상하며, 6개월간 도서관 이용을 금지하고, 학과장에게 통고하여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 회부한다. <개정 2016-02-29> ②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며, 수강신청, 복학원서, 휴학원서, 제 증명서 발급 및 제 급여금 지급보류 등을 교무처장과 사무처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.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조문대비표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학술정보원(도서관)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"시간강사, 조교 : 10책 15일"을 "강사, 조교 : 10책 15일 <개정 2016-02-29>"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"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한다."를 "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 회부한다. <개정 2016-02-29>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